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 명시 및
과태료 부과 수준 상향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23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8. 1.
3.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30일까지 최대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시정조치 지연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u>제출하게 할</u> 수 있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 ----- ----- <u>제출하도록 요구할</u>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요</u>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④ (생략)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

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3항-----

-----.

⑦ -----제3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 아니한 경우 <u>제63조제2항에</u>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 <u>제63조제3항에</u>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u> <u>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 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u>제63조제3항</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u>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u>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u> <u>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u> <u>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u> <u>짓으로 제출한 자</u>	<삭 제> 26. <u>제63조제3항</u> ----- ----- -----
26. <u>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u>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u> <u>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u>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위원회가 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¹⁾.

○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²⁾.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및 고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적 지연 시 제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³⁾⁴⁾.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거짓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후 추가적으로 부여된 시정기간 내에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

○ 이는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명시적 기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악용하여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관행을 방지하고, 보호위원회가 위법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조사 권한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먼저,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3) 이투데이, “태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2025. 3. 27. (<https://www.etoday.co.kr/news/view/2456702>)

4) 참고로 현재 보호위원회는 특정한 기간 도과 시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별로 미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또한 보호위원회 출범(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자료 미제출 또는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3건임.

예외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위반 사건의 규모, 원인, 관련 시스템 범위 등에 따라 조사 난이도와 제출 자료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사건 및 제출 요구 자료의 내용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밖에 없어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를 저해할 수 있고, 오히려 60일 이내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범위반사항의 규모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60일 기한을 설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불복,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1억원으로 정하고, 시정요구 기한 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상한액 수준이 행정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수준과의 형

평성 역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기한 내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3억원(=최초 1억원+시정기간 내 미시정 시 2억원)이 될 수 있어 소규모 기업 등에게는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상한이 가장 높게 설정된 위반행위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인데⁵⁾,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보다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보호위원회**는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2억원이라는 고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에는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및 위반기간에 비례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이행기한은 법률에 명시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소회의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108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